

가. 연구명 : 장애인생활시설생활인인권상황실태조사
 - 양성화된 조건부신고시설을 중심으로-

나. 연구 기간

- 전체 연구 기간 : 2005년 7월 ~ 2005년 11월 (5개월)
- 조사 일정 : 2005년 8월 넷째주 ~ 10월 말 (약 10주)
- 각 주별 세부 일정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1주차	① 수행계획서 확정	① 조사메뉴얼수정 ② 조사설계 -설문항 준비 ③ 기준 문헌연구	본조사 (20개시설- 주 2~3 회 조사)	① 조사내용 코딩 ② 자료정리 ③ 문헌연구	①조사 내용 발표		
2주차	① 조사메뉴얼 작성 ② 조사자 확보 ③ 예비조사 설계 -설문항준비	* 공식휴가		① 조사내용 분석 ② 보고서 작성 ③ 문헌연구			
3주차	① 조사메뉴얼 작성 ② 조사대상 시설선정	① 기준 문헌연구 ② 조사설계 -설문항 초안검토 ③ 본조사 계획수립 -조사자배치 및 역할분담 ④ 예비조사 준비 (혹은 조사 진행)		① 발표준비			
4주차	① 문헌연구 계획수립 ② 조사대상 시설확정	① 기준 문헌연구 ② 조사자교육 ③ 설문항 확정 ④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시작		① 보고서 마무리			
비고	① 기준 시설운동시설분석 -> 10월까지 (*별도의 보고서 제작) ② 정책대안 연구 -> 정책연구위원회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10월까지						

- 일별 복지시설 방문 계획 (* 사정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 확정된 방문조사 일정 (8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번호	조사예정일	시도
1	8월 30일 (화)	충북
2	9월 1일 (목)	서울
3	9월 6일 (화)	강원
4	9월 8일 (목)	전남
5	9월 13일 (화)	전북

번호	조사예정일	시도
6	9월 15일 (목)	경기
7	9월 22일 (*수)	경기
8	9월 23일 (목)	경기
9	9월 27일 (화)	전남
10	9월 29일 (목)	경기

▶ 일부 미확정된 방문조사 일정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³⁶⁾

번호	조사예정일	시도명
11	10월 1일 (*토)	광주
12	10월 4일 (화)	서울
13	10월 6일 (목)	전북
14	10월 11일 (화)	경북
15	10월 13일 (목)	대전
16	10월 15일 (*토)	대구

번호	조사예정일	시도명
17	10월 18일 (화)	부산
18	10월 20일 (목)	인천
19	10월 25일 (화)	경남
20	10월 27일 (목)	충남
21	미정	제주
22	11월 1일 (화)	강원

36) 10월 전에 확정 완료 예정임.

다. 연구 범위

1) 문헌연구

- 기존의 인권침해와 비리시설에 대한 문헌 조사, 국내외 정책자료 조사, 외국입법례, 정책 검토

2) 생활인 인권실태조사

(1) 조사대상

- 전국의 양성화된 조건부신고시설중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약 364명

(2) 조사내용

- ① 생활인 인권실태 조사 : 20개 조사 대상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인 364명 (1:1 면접 설문조사 방식으로 생활인 전수 조사 진행)
- ② 시설실태조사 : 장애인 생활시설 20개 (각 시도별 시설분포를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하되 인권침해 의혹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시설 우선 조사)
- ③ 질적 연구 20사례 : 생활인 실태조사 응답자 중 심층인터뷰가 가능한 생활인 20명 (가능한 성별과 연령,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질적 연구는 공동연구원이 진행할 예정임.

3) 대안연구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 등 개정안 연구, 복지시설정책 대안연구

4) 연구내용 및 방법

(1) 문헌 연구

- ① 문제시설 사례연구 : 연속 집담회를 통해 내용 수집

- ② 사례연구 자문위원회 운영 : 기존 사례분석 연구 진행 (비리유형과 인권침해 유형 등 분석)
- ③ 국내외 관계법령과 정책 평가 진행

(2) 장애인시설 생활인 인권실태 조사

- ① 조사팀 구성 및 조사자 교육 : 전국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조사자를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함.
- ② 조사 매뉴얼 제작 : 그동안의 조사경험을 바탕으로 조사자 교육용 매뉴얼 작성, 구체적 조사방법론 기술을 위주로 함.
- ③ 조사 설계 및 설문항 구성 : 조사목적에 따른 조사 설계와 설문항 구성
- ④ 예비 조사 및 조사 설계 수정 : 임의로 구성한 조사설계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시행. 방문 후 조사설계 내용 수정보완
- ⑤ 조사 대상 시설 및 면접 대상자 선정 : 전국의 양성화된 시설 명단 확보, 선정.
- ⑥ 본 조사활동 진행 (조사내용 및 방법) : 8월 넷째 주 ~ 10월 말까지 매주 2회(화, 목)씩 방문조사활동 진행(구체적 조사일정은 아래 참조)
- ⑦ 조사내용 정리 및 분석 : 매회 조사활동을 벌인 시설들의 인터뷰내용등은 책임연구원이 최종 정리, 이후 매회 방문조사한 내용을 코딩 작업 및 분석, 분석을 토대로 토론후 원고 작성
- ⑧ 최종 보고서 제작 및 발표회 : 국가인권위 계획으로는 11월까지 보고서 및 발표 마감 요청하였으나, 12월 첫주 인권주간에 조사결과 발표
- ⑨ 대안마련을 위한 법개정 내용과 복지시설 정책 연구 : 기존 문헌연구, 인권실태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 연구, 논의, 정책연구 위원회등 자원위원들과 연속 토론 진행

5) 조사 비용

- 조사비용 : 차비, 식비, 조사활동에 필요한 물품비 등 실비 지원
- 조사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1일 기준) : 일비 10,000원과 조사대상자수에 따른 조사비용³⁷⁾

6) 연구자 소개

- 책임 연구자 : 남구현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동 연구자 : 박숙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 김명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자, 한경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임성만 (장봉혜림원 원장, 성공회대학교 강사), 박경석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대위 집행위원장),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에바다복지회 이사), 임소연 (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화센터 팀장), 염형국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변호사), 박옥순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장), 여준민 (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활동가, 함께걸음 기자), 김정하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 위한공대위 사무국장), 김주현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 위한공대위 사무차장)
- 정책연구 자문위원회 : 김정열(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유찬호(나눔의집 그룹홈 원장), 김수정(사회학자), 임성택(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진범수(안양시 정신보건센터장), 정상훈(행동하는 의사회 의사), 안진(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000 교수)
- 문헌연구 자문위원회 : 이승현(에바다복지회 사무국장), 김구(우리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조현민(정립공대위 활동가), 허익수(법학자), 이태근(함께걸음 편집장)

4. 조사방법

가. 조사활동의 과정

37) 조사비는 일비 1만원, 사례당 면접비 1만원이며 설문지를 성실히 작성한 후 제출후 지급됩니다.

- ① 사전에 방문할 시설을 결정하고, 조사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정보를 수집한다.
- ② 조사활동에 참여할 사람들을 조직한다.
- ③ 조사대상자들의 장애상황과 규모에 따라 조사할 내용을 재검토한다.
- ④ 조사 당일의 일정과 역할을 분담한다.
- ⑤ 조사활동에 필요한 차량, 차표, 촬영도구, 물품 등을 정비한다.
- ⑥ 조사자들과 사전모임(조사당일 오전)을 갖고, 조사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정보와 조사내용, 하루일정을 공유한다.
- ⑦ 조사자 역할분담 후, 분담된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잘 되었는지 확인 한다.
- ⑧ 준비된 교통편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시설로 이동한다.
- ⑨ 시설에 도착하면 각자가 맡은 역할을 이행한다.
- ⑩ 조사시 위급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조사책임연구원에게 알려준다.
- ⑪ 조사일정은 당일 상황에 따라 조사책임연구원이 조정할 것이며, 정해진 시간내 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시간고려를 하여 인터뷰를 시행한다.
- ⑫ 조사활동을 마무리하면 가져온 개인물을 두고 가지 않도록 확인하고, 생활자들과 인사를 나눈다.
- ⑬ 준비된 교통편을 이용해 돌아오되, 마무리하는 평가회의에 반드시 참여한다.
- ⑭ 당일 시행한 조사내용은 다음날까지 이메일, 팩스, 직접전달방식으로 사무국에 전달한다.

나. 하루 일정 38)

번호	시간	조사활동 내용	준비사항 및 준비물	기타
1	오전8시까지	시전회의장소 집결	시설사전정보, 설문지, 볼펜, 촬영도구, 차량확인 등	
2	오전9시까지	시전 회의 진행	※조사자교육을 못받은 사람 확인하여 별도의 교육 진행	
3	오전9시부터 11시 전후	조사대상시설 근처에 도착	외관 촬영 및 지역주민등 확인	
4	오전11시부터 오후1시까지	점심식사 및 최후 점검, 시설 도착	상황에 따라 김밥등을 준비	
5	오후1시30분	조사활동 시작	각자가 설문지, 볼펜, 촬영준비 등 확인	
6	오후5시까지	조사활동 마무리, 인사하고 출발	시설운영자에게 입수한 자료등 쟁기기, 설문지 확인, 개인물품 확인	
7	오후6시	근처의 식당에서 저녁식사하면서 평가회의 진행	평가내용 준비, 회의록 기재	
8	오후7시 30분 이후	귀가	조사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역편성, 주유비 및 툴비 쟁겨주기	
9	미정	희망자에 한해 뒷풀이	뒷풀이 비용은? ^~	

※ 도착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나, 되도록 점심시간이 끝날 즈음 방문하여 식사내용을 불시에 확인토록 함

다. 조사자의 역할 분담

1) 생활인 설문조사자

38) ※지역과 시설규모에 따라 시간 차이가 있으며, 아래 일정은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임

- 먼저, 생활인들의 숙소에 가서 인사를 한 후, 조사활동을 나온 목적과 본인을 소개하고 한분 한분씩 인터뷰를 한다. 조사를 마치고, 이 내용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다시 설명하고, 다른 분을 인터뷰한다.

2) 시설운영자 설문조사자

- 시설운영자를 명확히 파악한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척, 기타 지인들이 운영에 참여한다면, 한자리에 모이도록 한다. 때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관에 도움을 받는다.
- 시설운영자가 조사에 협조적일 수 있도록 편한 시비를 피하고, 또한 자기상황을 장황하게 늘어놓아 원하는 내용의 조사활동이 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자.
- 시설운영자에 대한 설문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하되,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복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이때도 필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도움을 받는다.
- 시설운영자 외에도 시설운영 및 관리에 참여하는 종사자나 가족 등이 있을시, 같은 조사를 시행한다. 이때 상황이 된다면 시설장과 다른 장소에서 조사한다. 조사인원이 부족할 때는 조사책임연구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조사인원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3) 시설환경 및 주변 조사자와 각종 촬영자

- 시설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와 사진을 꼭 찍어둔다. (시설외벽, 각종 출입문, 잠금장치, 식당 및 주방, 화장실, 공동생활공간(거실 등), 세탁실, 목욕실, 물품창고, 소화 장비, 창문,)
- 시설환경과 관련하여 공간의 크기와 제반사항을 자세히 기록한다.
- 특이한 상황은 꼭 사진촬영을 해둔다.
- 찍은 사진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확인한다.

- 생활인들은 사전 등의 없이는 촬영하지 않는다.

4) 변호사의 경우

- 조사자들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법률적 상담을 원하거나 조사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를 우선하여 상담한다.
- 법률적 조치가 시급히 혹은 추후에 필요할 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상의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준다.
- 우리가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때에는 가능한 자원을 안내해 준다.
- 상황에 따라 시설내 폭력이나 기타의 범법행위들을 발견할 시는 바로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5) 의료인의 경우

- 생활인 전반에 대한 일반적 의료상황을 확인한다.
- 특별히 시급히 치료를 요하는 사람을 알려준다.
- 특별히 장기치료를 원하는 사람을 알려준다.

5. 조사내용

가. 조사 증거 틀

-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장애인인권헌장 등 각종 권리 선언에 근거하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그 나이의 생애 주기에 맞는 보편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나. 조사내용

- 조사내용은 크게 시설 환경, 생활인 인권 및 생활환경 조사, 생활인 욕구 3가지로 나누고, 조사자로 전문인이 함께하여 의료적·법률적 의견을 첨부한다.

1. 시설환경 - 시설운영자와 시설환경
2. 생활인 인권 및 생활환경 - 면접조사(양적조사), 심층조사(질적조사)
3. 생활인 욕구
4. 조사자 의견
5. 전문가 의견 - 법률인, 의료인

1) 시설환경

- 시설운영자설문지와 시설환경설문지로 구분하여 시설 운영 전반과 시설의 물리적 환경 등에 대해 조사한다.
- 운영위원회 등 시설민주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조가 있는지, 입·퇴소절차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있는지, 장애인시설로서의 서비스를 유형과 연령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지, 서비스제공에 있어 지역 내 연계가 되고 있는지 등 시설 기본적 사항을 알아본다.

2) 생활인 인권 및 생활환경

- 이번 조사활동의 핵심
- 생활인 인권은 20개 시설 생활인 모두를 면접 조사하는 양적 조사와 그 중 10여명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질적 조사로 나누어진다.
- 양적 조사의 경우 각종 권리 선언을 증거 틀로 하는 기본권과 생활환경 중심으로 조사하고 질적 조사는 양적조사 실시 후 시설에서의 생

활기간, 장애유형 및 성별, 연령, 조사자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양적조사 설문지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켜 심층적으로 접근한다.

3) 생활인 욕구

- 현재 가장 하고 싶은 일, 퇴소 후 하고 싶은 일, 퇴소 시 보장받고 싶은 환경 등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조사하여 시설 생활에 대해 당사자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고, 퇴소 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서비스, 정책 마련을 위한 기본 자료를 구축한다.

4) 조사자 의견

- 설문항목에는 없지만 조사자가 조사 후 느낀 점, 객관적 관찰 항목 등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여 작성한다.

5) 전문가 의견

- 의료 : 생활인 전반에 대해 의료적 상황, 시급하고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판단 등 의료적 상황에 대해 조사
- 법률 : 법적 상황에 대한 대처, 상담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언 등 법률적 상황에 대한 대처

다. 조사항목 - 구체적 설문 항목은 별도 첨부 참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	시설환경	시설환경 + 시설종사자
1)	개인정보	개인정보 일반
2)		입퇴소 자유
3)		구제 진정 절차
4)		외부소통과 표현의 자유
5)		폭력
6)		성폭력
7)		강제노동
8)		종교의 자유

9)		프라이버시권
10)		경제적 권리
11)		침정권
12)		성적 권리
13)		정보기본권(정보제공, 정보접근 등)
14)		의식주 생활 전반
15)		안전할 권리
16)		의료보장
17)		문화권
18)		접근권 - 편의제공
19)		교육
20)		직업
21)		가족권
22)		시설운영에 참여
23)		관리 감독 책임
24)		지역사회와의 연계
25)	욕구	현재 가장하고 싶은 일 퇴소한다면 하고 싶은 일 퇴소 시에 보장받고 싶은 환경 – 지원서비스와 연계
26)	조사자의견	조사자 의견
27)	전문가의견	의료인, 법률인 의견

6. 조사 설문지 기록 및 정리 방법

- 1) 설문지에 조사원이름, 조사일자, 조사시설, 조사소요시간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 2) 면접 후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 ① 설문지 : 면접이 끝나 기록된 설문지와 사용하지 않은 설문지 모두
 - ② 조사자의견서 : 설문 끝난 후 느낀 점이나 객관적인 사실, 관찰한 내용 등 조사를 마친 후 갖는 여러 의견들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③ 면접동의서 : 면접 전에 작성하시고 생활인의 친필 서명을 받아 주

십시오.

3) 배포된 설문지는 면접이 끝나 기록된 설문지와 사용하지 않은 설문지 모두 수거합니다. 본인이 가져간 설문지를 시설에 두고 오거나 빼어버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설문지는 당일 수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 중에 기록하지 못한 부분들은 조사 당일에 모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모든 설문 항목에 응답은 가능하면 모두 기록합니다. 기록하지 않은 경우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예) 생활인이 말하기를 꺼려한다. 다른 답변을 한다.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답변을 기록합니다.) 등

6) 응답 중에 숫자가 거론 된 경우는 명확히 기록합니다. 객관식에 숫자가 응답 중에 없다하더라도 생활인이 이야기하면 보충으로 적어둡니다.

【예】 아래의 설문항목에서 ②로 응답하면서 '한 달에 한번정도 편지를 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내용을 기록해줍니다.

(1) 자유롭게 편지 왕래가 가능합니까?

- ① 자유롭게 편지 왕래가 가능하다.
- ② 편지를 쓰거나 받는 날이 정해져있다.(한 달에 한번 정도)
- ③ 편지는 아예 쓰지도 받지도 못한다.

7) 응답 옆에 보충으로 적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가능하면 모두 기록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적절히 보충 내용을 응답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물어봅니다.

【예】 아래의 설문항목에서 괄호 안에 있는 내용도 기록합니다.

(1) 시설 입소 시에 입소금을 냈습니까?

① 내지 않았다.

② 입소금만 냈다.(입소금 :)

③ 입소금과 매달 이용료를 내고 있다.(입소금: 35만원, 이용료: 30만원/월, 이용료를 내는 사람: 큰 아들)

* 설문항목에서 괄호 () 안의 내용은 대부분, 회수, 이유 등을 묻는 질문입니다. 생활인의 답변에 대한 의미를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보충 자료이니 번거롭더라도 꼼꼼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객관식의 경우 응답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기록하고 적절한 답변이 없는 경우, 기타에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번호를 만들어서 생활인이 응답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예) 아래의 설문항목에 대해 '폭력적인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고 응답하면 기타에 답변을 기록합니다.

(1) TV, 신문, 컴퓨터 등 정보매체를 사용하는 것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 ① 먼저 사용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권을 갖고 차례로 이용한다.
- ② 방장이나 실장 등에 우선권이 있다.
- ③ 시설 종사자에게 우선권이 있다.
- ④ 기타 (폭력적인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

9) 주관식의 경우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생활인의 이야기를 가급적 정리하여 적으며 핵심단어 중심으로 기록해주세요.

조사자가 알아야 할 것들(1)**실태조사 면접 지침**

이은미(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1. 면접에 들어가면서

- 1) 조사자 신분 밝히기
- 2) 조사취지 및 내용 설명
- 3) 조사 참여 동의서 읽고 서명(비밀보장 등 고지)
- 4) 중립적, 객관적 태도 유지
- 5) 공간파악 및 면접분위기 조성(긴장을 푸는 대화 시도)

2. 면접은 대화이다.**1) 일상 대화**

- 대화의 주제에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대화의 목적과 구조는 문제시되지 않음.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대화가 중단되면 대화는 자발적 단계에서 이야기의 목적과 형식이 고찰되는 메타차원으로 변화됨. 예를 들어 참가자 한 명이 “왜 이런 걸 묻니?”라고 질문할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함.

2) 전문적 인터뷰

- 법적 심문, 취업인터뷰, 치료적 인터뷰, 연구 인터뷰 등. 어느 정도 체계적인 질문기법과 함께 각각 서로 다른 목적과 구조를 가짐. 전문적 인터뷰에서는 항상 힘의 불균형이 나타남.

3. 면접진행상의 구체적인 기술

- 1) 조사자는 질문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질문해야 함. 대상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 이런 경우 질문내용을 다시 설명해주고 쉽게 이해할 수 용어로 바꾸어 질문할 것. 또한 부가적 질문에서 서술형의 질문을 할 경우도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해야 하고 애매모호한 질문이나 이중질문, 유도질문을 피해야 함.
 - 2) 조사자는 설문항목에 대한 빠른 대답을 지나치게 강요하지 말아야 함. 대상자가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원하지 않는 답변은 왜 그러한지에 대한 이유를 타진해 보아야 함.
 - 3) 인터뷰 대상자가 글을 읽지 못하거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민감하게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해야 함(질문이나 대답을 정확하게 읽어주거나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나 요구사항을 배려함)
- 4.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난제들**
 - 1) 인터뷰 대상자의 이야기가 계속 삼천포로 빠진다.
→ 무조건 자르기보다 일정 부분 경청한 후 예의를 갖추어 다시 질문이나 주제로 돌아오도록 노력한다. 조사자가 대상자의 이야기에 심취해 방향을 잊거나 오히려 더 흥분하여 추가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 2)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진술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조사자를 무서워하거나 의심한다. 방어적이다.

→ 가장 어려운 경우이다. 이럴 경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대상자의 진정이나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화로 시작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 중간 중간 침묵하거나 대답을 회피할 때 이를 존중해주고, 일정 부분 받아들여야 하며, 조사자가 지나치게 대답을 강요하거나 먼저 대답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3) 사용하는 언어나 표현방식이 정확하지 않아 도무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 번거롭더라도 재차 묻는 것이 좋다. 다만, 다른 표현을 사용하거나 조사자가 이해한 바를 재구성해서 말함으로써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 인터뷰 대상자의 답변에 일관성이 없다.

→ 특히 숫자나 일시 등에 대해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대상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기억이 오래되었거나, 본인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할 수 있고, 전후 상황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부분의 내용만을 듣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따라서 조사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확인해야만 하는 사항이라면 다시 확인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빨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한다.

5) 질문에 맞는 대답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고자하는 이야기가 있다.

→ 뭔가 대상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내용일 수 있으므로, 정신적 문제로 인한 증상이 아닌 경우 주의 깊게 듣고 내용을 탐색해야 한다.

6) 인터뷰 대상자가 사용하는 특정 언어가 일반적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 같은 단어나 구라도 특정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은어나 속어 등이 있을 수 있다. 조사자는 민감성을 가지고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7)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위협적이거나 서로 모순된다.

→ 조사자에게 세심한 관찰기술은 필수적이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세부적인 사항, 인터뷰 동안의 대상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얼굴 표정, 몸짓, 손짓, 눈맞춤 등)을 관찰하여 중요한 점을 그때 그때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함(시간이나 상황상 모두 적을 수는 없음을 기억하고 추후 정리할 때 떠올릴 수 있는 핵심단어를 기록할 것)

8) 외적 방해물이 나타난다.

→ 면접상황임을 알리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다.

5. 면접을 마치며

1)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멘트와 감사표현을 정중하게 함

2) 대상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 설불리 약속하지 말 것.

3) 개인적 정보를 주지 말 것.

□ 참고자료

- (1) 신경림 역(1998) 『인터뷰』 하나의학사.
- (2) 신경림 외 공저(2004) 『질적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3) 데보라 K 패짓/유태균 역(2001) 『사회복지질적연구방법론』 나남출판.

네. 조사자가 알아야 할 것들(2)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조사자 서약서

1. 조사자강령

- 조사는 반드시 조사자가 동의할 때만 시작합니다.
- 조사대상자에게는 반드시 경어를 사용합니다.
- 시설생활인이 조사의 사전, 사후에 알아야 할 내용은 반드시 알려줍니다.
- 조사시, 위급상황이라고 판단할 때는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조사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진 촬영이나 녹음, 동영상 촬영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조사내용은 반드시 잘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조사시 유념 사항

- 조사시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 조사한다. 동의시 조사의 목적 등에 대해 안내한다.
- 생활인의 동의를 구하고 거실(방)에 들어간다.
- 여자생활인들은 되도록 (or 꼭) 여자조사원이 조사토록 한다.
- 시생생활인들이 조사 참여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보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단독인터뷰, 되도록 개별적 장소에서 시행한다. (*단, 단독인터뷰가 불가능한 경우는 주위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
- 시설생활인중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거나, 원장의 측근인 사람들을 사전에 분리하여 조사시 생활인들이 위축되거나 피해 받지 않도록 한다.
-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이 겁치지 않도록 한다. 간혹 두 번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 당사자의 장애특성을 이해하고, 질문시 유의한다. 예를 들어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중복적인 질문이나, 어려운 단어의 사용, 긴 질문을 피한다.
- 조사목적이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조사내용이나 사진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개인이 사용하면 안 된다.

-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데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여서는 안 된다.
- 간혹, 조사자가 가진 물건을 요구하거나 핸드폰 사용 등을 요구할 때가 있다. 이럴 경우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준다.
- 이번 조사의 목적은 생활인들의 인권실태와 욕구조사가 기본이므로 시설 장과 괜한 시비를 할 필요가 없으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그러나 운영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할 수 있으니 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시설생활자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여 괜한 기대를 하거나 추후에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빠른 시일 내 방문하겠다든지 등.
- 조사원들이 불시에 방문하고, 갑자기 시끄럽고 변화된 상황에 당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최대한 조사자들도 큰소리를 내거나, 조사자끼리 크게 떠들지 말자.
- 생활인에 따라 조사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자. 예를 들어 기존에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혀 변화가 없고 면담에 대한 보복조치만 있어서 방문조사원들을 꺼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생활인들은 우리가 조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 당일의 상황에 당황하거나 서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마지막 인사를 꼭 하자.

본인은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조사자로 참여하여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5년 월 일

이름: (서명)

조건부생활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귀중

시설생활인의 현실과 개선 방법

우선미

우리이웃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뇌병변 1급

저는 20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 하다가 지역사회에 나온 지 이제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시설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면 너무 어렵고 애매합니다. 세상과 나를 단절하고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시설생활의 현실입니다. 요즈음 '탈시설화'란 말을 많이 듣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어쩔 수 없어 사는 것이지 자신들이 원해서 시설생활은 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자유는 있을지언정 인권은 거의 외면당하고 삽니다. 그게 시설 생활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여야지 사실, 시설이 운영될 수 있으니까요. 생활시설이 좋은 점이라면 때가 되면 밥과 옷이 나오니까 그것 하나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먹을 것, 입을 것만 해결된다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시설도 등급별로 나누어서 평가가 잘 나와야지 운영비를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점은 밖으로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회에 알려 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시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어도 의료 사고로 넘기고 맙니다.

시설에서는 지능이 있는 중증 장애인들은 대우를 못 받고 인격도 종종으로 대우하는 환경 속에 삽니다. 지능이 있어 아는 것이 많으면, 말도 많고 요구하는 것도 많아서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중증장애인은 머리를 쓰는 기마라도 보이면, 그대로 가만히 있지 머리를 쓴다고 난리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면 멍청하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고 눈치만 보는 그런 생활이 되지요. 늘 생활시설에서는 장애상태가 심할수록 능력도 무시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로, 밥만 축내는 존재로 인격적인 무시 속에 구박덩이로 살아야 합니다.

시설에서의 언어폭력, 정말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선배직원에게 배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런 상황 속에 물들어 간다고 할까요? 나이에 상관없이 반말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선배 직원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생활교사로 들어 왔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배의 말씨와 태도를 닮아 가 버립니다. 시설생활자들에게 잘 대우해 주는 것 보다 선배직원에게, 상급직원에게 더 잘 보이는 편을 택하게 되고 자신들도 모르게 변해서 시설생활자들에게 반말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다시 장애인은 무시와 차별 속에 생활하게 되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시설이 개방화되고 많이 열려 있지만 기존직원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새로 들어온 직원들의 시설생활자들에게 대하는 태도도 말씨도 달라집니다.

물론 시설직원들 모두가 장애인을 무시하고 구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성심껏 도와주려 애쓰며, 억울함을 들어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얘기지요. 그런 분들 때문에 시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손길이 미치지 못한 어두운 곳에는 지금도 무시와 멸시가 세습화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이라서 당연히 무시해도, 반말을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근본적으로는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생활자들은 머리스타일도 직원 또는 교사 생각에 따라 좌우됩니다. 머리카락을 아무리 기르고 싶어도 교사들 편리할 대로만 하기 때문에 스스로 손질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짧게 다 잘라 버립니다. 여자이고 사람인데 머리를 기르고도 싶고 예쁘게 변화도 주고 싶어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머리를 짧게 자른 스타일 외에는 선택권이 없을 때, 여자로서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게 없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하나의 작은 인권을 빼앗기는 결과라고 봅니다. 글쎄요. 시설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인권침해까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스스로 개성을 살리고 싶고 한참 멋 부리고 싶은 사춘기 시절에도 머리모양도 마음대로 못 해보고 몇십 년을 짧은 머리 스타일로만 살아야하는 것도 인권이 무시당하는 거라고 봅니다.

제 자신도 한번은 긴 머리를 하고 싶어서 담당 교사에게 머리 기르고 싶다는 얘기했다가 주제도 모른다고 얼마나 많은 편찬과 구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때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다시는 머리를 기르고 싶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고 포기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시설생활자들에게는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참으로 많습니다. 생활시설에서는 정신지체인은 관리하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무런 불만도 없고 요구 사항도 그리 많지도 않고, 생각이 많은 중증장애인들보다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정신지체시설이 가장 많은가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의 끼어 복지국가라는 말들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고 살고 있지만 지금의 현실이 정말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복지 국가 인가요? 복지의 뜻은 '만족할 만한 생활환경'이고, 복지 국가란 '기본 목표를 국민의 생존권의 보장과 생활상의 행복을 늘려 나가는 데 두는 국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나라 복지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소외 계층들이 살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생활환경인지를, 또 우리나라가 복지 국가란 말이 어울리는가 말입니다.

어느 신문을 보니 뉴질랜드는 올해로 마지막 하나 남은 시설이 없어진다는 기사의 내용을 보고 참으로 놀랐고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린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내년에 2개의 인가시설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시설이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우리나라에서는 말로는 탈시설화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생활시설을 늘려가는 현상을 저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린 시절에는 시설생활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정말 살기 싫은 곳이 시설이란 곳입니다. 제가 너무 시설 대한 기준을 저의 중심으로 이야기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시설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나 양면이 있듯 시설에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 갈 곳이 없었을 때 받아주고 성인이 되도록 살 수 있는 시설이 고맙고 감사한 면도 솔직히 있습니다.

생활시설운영에 하고 싶은 제안을 몇 가지를 적고 맺을까 합니다.

첫째, 생활시설의 운영방침에 대해서입니다.

생활시설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중진들이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족벌체 제운영이 문제이고, 친족 간에 승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정상의 비리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장애인 시설이라면, 직원의 일부는 장애인 직원채용을 운영방침의 의문조항으로 해서 운영 되어야 할 것이며, 시설을 폐쇄된 공간으로부터 열린 공간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성인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보다 체계적으로 우선 실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생활재활교사를 채용 할 때도 계약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생활재활교사들은 시설 생활자들과 접촉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한곳에서 오랜 시간동안 근무를 하다보면 생각들도 나태해지고 인격적인 사람들이 변하여 장애인을 대하는태도도 비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재활교사가 계약제가 된다면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 보아서는 계약제도 좋을 것도 같습니다.

셋째, 약물복용은 의사의 전문 진단후 꼭 필요한 사람만 복용했으면 합니다

시설생활자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물 중에서 강직을 부드럽게 해 준다는 신경안정제인지? 근육이완제인지? 하는 약은 모르겠지만 장기간 복용은 부작용도 있고 후유증 있는데, 계속 먹어야하는지, 의료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의사의 전문 진단 후 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복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증장애인들이 힘겹게 중증장애인을 도와주는 역할을 생활교사들을 보다 늘려 좀 했으면 싶고, 시설 운영자와 중진 분들은 시설생활자들의 생활을 서류로만 보고 받지 마시고, 시설생활자들 개개인의 생활과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에 인원이 많으면 자연 통솔하는데 규칙들이 많아야 하고, 많은 인원 각각의 인권을 존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은 하루 빨리 소규모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시설의 나쁜 점만을 말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은 내용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든 어떤 환경에서 살든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이라면 이제는 시설생활자들도 인격적으로 무시 받지 않고, 중증장애인가 곧 인격으로 평가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시설생활자 인권보장법'이 빨리 제정되어 시설생활자들의 인권도 보장받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

박정혁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간사

1996년, 저는 집안의 경제사정 악화로 강원도 철원의 모 장애인 요양원으로 저의 삶터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 27세, 몸이 멀쩡했다면 한창 일할 나이였죠. 하지만 전 중증의 뇌성마비 장애인이었고 당시 저의 짧은 생각으로 거기밖에 갈 데가 없었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곳에서 많은 장애인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7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그곳에 입소했을 때, 저는 어리석게도 장애인은 의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자라하면 시키는 대로 자야하고, 깨우면 일어나기 싫은데도 일어나야 하고, 장애인들은 항상 열등한 존재이며, 부족하기에 비장애인들의 동정과 시혜 속에 시설에 수용되거나 가족들에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입소 이틀 후, 보모 손에 이끌려 강제로 머리를 깎여도 항의조차 못했고, 어느 날 아침, 우리 방에서 함께 자는 자폐장애를 가진 어린 친구가 세수를 하고 나와 보모의 수건으로 얼굴을 닦다가 보모에게 걸려서 단지 자신의 수건을 썼다는 이유로 흄신 두들겨 맞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마음만 아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에서 나이가 찼다는 이유로 본인들의 동의절차도 생략되고 소풍간다는 말에 속아 그곳에 입소한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육체적 장애를 갖고 있기는 했지만 정신

적으론 누구보다 건강한 사람들인데도 이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자들의 시설비리를 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터져나온 터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설 속 장애인들의 인권을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있던 시설은 저 외에 약 거의 500명의 장애인들이 입소해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정신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었고 저와 비슷한 장애 유형도 약 10% 가까이 됩니다. 우리들의 하루일과는 6시 기상, 7시 30분 아침식사, 12시 점심식사, 5시 30분 저녁식사, 7시 취침, 이것이 500명 규모의 시설의 하루생활입니다. 대부분의 그곳의 장애인들은 이런 식으로 생활합니다. 이들에게 개인 시간은 없습니다. 봄과 여름철엔 일광욕 시간이 있는데 이것도 단체적으로 행해지는 연중행사일 뿐입니다.

1년 12달 매일의 하루일과가 이런 식으로 똑같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도 거의 들지 않을까요?

며칠 전 그곳 시설에서 한 장애인 분이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돌아가셨는데 평소 시설에 있을 때 친분이 있던 터라 함께 여의도에 가서 놀다가 하룻밤 더 묵고 들어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뉘엿뉘엿 저무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설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그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왜 빨리 안 들어오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분 말이 외출증을 끊을 때 오늘 날짜로 끊었고 나올 때 함께 데리고 나온 정신지체인 친구 때문에라도 빨리 들어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부랴부랴 자원봉사자를 구해 저희 센터에 장애인 리프트가 장착된 차로 모셔다 드렸는데... 철원으로 향하는 차안에서의 그분의 표정이란... 마치 몇 년만에 외출나갔다 돌아가는 무기수의 심정처럼 그 분의 얼굴엔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오갈 데 없는, 사회에서 일도 못하고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 당하는 곳일까요?

감히 말하건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부터 그 장애인에겐 불행의 시작입니다. 저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배우는 의무교육도 받지 못했고 외출 기회조차 27년간 재가장애인으로 살아온 동안 1년에 한번 될까말까였습니다. 그 뒤 7년이란 세월을 장애인 시설에서 옥살이 아닌 옥살이를 했습니다. 전 그곳에서 장애의 아픔을 느꼈고 차별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장애인들의 삶이 고작 이것뿐인가? 란 푸념도 했었고요.

TV에 나오는 교도소의 풍경과 제가 살던 시설의 풍경이 흡사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교도소에는 수인번호라는 게 있어서 수인의 앞가슴에 붙이고 있는데 우리들도 방번호를 앞가슴에 붙이고 다녔고 머리 역시 수인들처럼 남녀 구분 없이 짧은 커트를 쳐야했습니다. 그래야 머리 감기기 좋다나 뭐라나 하면서 말이죠.

어째서 이렇게 우리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졌다는데 이유만으로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시설은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장애인들을 획일화 시키려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을 보다 손쉽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소질과 재능이 있고 천부께서 부여해 주신 능력들이 각자에게 다 존재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시설에서 그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와 함께 살았던 시설속에 제 동료들에게도 천부께서 부여해 저마다의 재능과 소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동료들의 그것들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장애라는 베일에 가리워진 그들의 재능과 소질은 시설속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스티븐 호킹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그가 지금처럼 저명한 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는 어는 산골 장애인 시

설에서 반짝하고 나타났다 신기루처럼 사라졌을 겁니다. 웬지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원석이 아무리 좋고 뛰어나도 그것을 개발하고 다듬지 않는다면 보석으로써의 가치는커녕 그저 하나의 돌로만 남겨질 뿐이겠죠. 그렇게 시설은 개인의 개성과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입소후 1년간은 시설의 시스템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조로운 생활을 견디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설 시스템에 대한 가벼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고 그에 대한 첫 단추로 글을 창작하며 이런 단조로운 일상에서의 반란을 꿈꾸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을 찾아보기 시작한 시기도 이때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그곳에서 시인으로 알려졌고 사무실에서도 저의 노력을 귀엽게 봤던지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고 문예 창작동아리 운영을 한번 해보라며 컴퓨터를 한대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손님이 올 때마다 저를 소개하며 시설 홍보하는데 활용하더군요. 저는 그 공간을 반란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필요했고 문예창작 활동에 필요하다는 구실로 자비로 전화를 놓고 컴퓨터에 모뎀을 달아서 인터넷을 시작했습니다.

II이 뭔지도 노말라이제이션normalization이 뭔지도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외국의 사회복지 체계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복지가 경제 수준에 비해 상당히 미달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2003년 저와 절친한 전도사로부터 장애인자립생활지도자대학 수강 공모 메일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저는 시설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입소해서 첫 번째로 해본 일은 지하철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33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지하철을 타본 일이 없었습니

다. 물론 처음 해 본 일이 어디 지하철뿐이겠습니까? 체험실에서 센터 식구들과 함께하며 노래방도 처음이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셔본 것도, 동료들을 따라서 집회에 나간 것도, 가게에서 스스로 물건을 사고 값을 지불한 것도, 하는 것마다 비장애인들은 눈 뜨면 늘상 하는 일들을 33년 동안 몸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저만 못해본 것들이었을까요? 센터에서 활동간사로 일하면서 종종의 적지 않은 재가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얘기해보면 한결같이 저의 33년 이전의 생활과 다를 바 없는 생활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세상에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스스로의 욕구들을 억제 시키며 자신이 움직이면 가족들에게, 또는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피해의식 속에 자신을 가둬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을 누가 가둬놓았나요? 우리나라 사회는 우리의 동료들을 죄인 아닌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거리에선 높다란 턱과 계단이 즐비하고 건물들은 대부분 저와 같은 휠체어 탄 장애인들에겐 접근조차 허용치 않는 건물구조, 버스도 탈 수 없고(서울에 저상버스가 다니지만 가뭄에 콩나듯 다니죠) 서울에선 그나마 장애인 콜택시라도 있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면 오지만 지방에선 그나마도 없는 실정입니다.

엊그제 우연히 국회방송에서 장애인 특별 소위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나라에 장애인 복지 예산이 전부 6천 억(8천 억이던가?)원이라 하더군요. 처음엔 꽤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 0.06%밖에 안된다니. 이런 금액 중 장애인 생활시설에 투입되는 돈이 얼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과반금액 이상이겠지요. 그러나 장애인 생활 시설 속에 장애인들의 삶은 여전히 최악입니다. 가족들에 보호를 받는 재가장애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언제까지 죄인 아닌 죄인취급을 받아가며 살아야 합니까.

저는 지금 현재 동대문구 소재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간

사로 일하며 33년간 배우지 못한 인생에 모든 것과 장애인자립생활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의 핵심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선택과 결정, 그것의 결과에 대한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선택과 결정들을 장애인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과 그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관리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는 좋건싫건 가족들과 관리자의 일방적인 의견을 따라야 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은 가족과 관리자에게 맡겨진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장애인 당사자에게 되찾아 주는 이념입니다. 저는 지금 그 이념대로 생활하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장애인 연금도, 활동보조인 제도도, 이동권도, 시설에 대한 접근권도, 아직은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 아직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위험한 일들도 많지만 새로운 장애인 복지제도인 장애인자립생활(IL)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는 자체가 저에겐 참 행복한 도전으로 남을 것입니다.

조건부시설 생활자인권확보운동의 배경과 경과

1. 조건부시설 생활자인권확보운동의 배경

- 2003년 9월 시설생활자들로 부터 제보를 받아 상담을 진행중이던 장애우 권리문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들이 제 2회 인권활동가대회에서 만나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의 인권확보운동을 결의 함
- 2003년 11월 성실정양원과 은혜사랑의 집에 대한 생활자 인권실태조사 실시. 미신고시설생활자들의 참혹한 인권유린실태가 드러남
- 두 개 시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두 개 시설 모두 정부의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에 의해 조건부신고복지시설로 신고하고 '법인'전환을 준비 중에 있음을 확인.
-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이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실태에 무방비한 상태로 시설장지원을 통한 '양성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중심의 "될수용시설화"에 역행하며 오히려 "시설화"를 부추기고 있다는데 문제의식을 갖게 됨.
- 2003. 11월 「조건부신고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준)」(이하 "조건부시설공대위"³⁹⁾)가 결성됨.

39) 경기복지시민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대한정신보건기족협회,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의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좋은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태화샘솟는집,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이상 22개 단체)

* 2003. 11 결성 당시 : 대한정신보건기족협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의문제연구소, 좋은집, 태화샘솟는집, CMHV(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7개 단체로 결성

2. 활동경과

- 2003. 11. 4 : 성실정양원(김학년·경기도 양평) 인권실태조사
- 2003. 11. 13 : 은혜사랑의집(전월순, 충남 연기군) 인권실태조사
- 2003. 11. 27 : 성실정양원 · 은혜사랑의 집 시설책임자 고발과 국가인권위 진정(양성화정책에 대한)
- 2004. 2. 4 : 성실정양원 · 은혜사랑의집 인권유린 실태로 본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침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2004. 4. 14 : 영낙원(박상모, 서울 은평구) 치매노인폭행사건 진상조사
- 2004. 4. 30 : 조건부시설 영낙원 폭행사건진상조사와 생활자인권보호 촉구 기자회견
- 2005. 3. 9 : 바울선교원(최선이, 경기도 안양) 인권실태조사 및 시설장 고발
- 2005. 3. 10 : 바울선교원 원인 모를 화재발생에 따라 생활자대피 및 옥구조사 실시
- 2005. 3. 15 : 바울선교원 관리책임 방기한 안양시장과 사회복지과장 직무유기 고발
- 2005. 4. 26 : 심신수양원(이기일, 강원도 인제) 관리책임 방기한 인제군 수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인권침해당한 시설생활자의 호소 무시하고 시설에 돌려보내 시설내 감금, 굶김, 폭행 피해 유발한 인제 경찰서 인권위 진정
- 2004. 9. 21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 2005. 5. 16 : 아동학대예방센터와 함께 지인언어치료원(최일호, 경기도 성남시) 장애아동 인권실태조사. 일시보호조치와 시설장 고발 조치
- 2005. 5. 18 : 지인언어치료원 인권침상 고발 기자회견 공동주최
- 2005. 5. 27 :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기/자/회/견/문

성실정양원, 은혜사랑의 집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 고발과 그 대책에 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아직도 우리 사회 어디선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3종 철문 안에 갇혀, 자신의 몸을 보호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갖은 폭력과 감금, 그것도 모자라 ‘금식’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굶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보호자가 오지 않으면 죽은 후에야 시설 밖을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움이 오히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을 확인한 우리는 성실정양원·은혜 사랑의 집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고 그 대책을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형기 없는 감옥’ 성실온해기도원의 심각한 인권침해 고발한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두 시설의 인권 실태는 ‘형기 없는 감옥’이다.

나쁜 죄질로 인해 20년 형을 받은 수인일지라도, ‘20년 후에는 출소할 수 있다’는 희망에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외부로 나갈 수 없다. 사방(四形 구조)이 꽉 막혀진 건물, 회색 빛깔의 균열된 벽,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2~3평 남짓한 작은 방에 7~8명의 사람들이 하릴없이 앉아 있다.

이들은 오전 4시부터 시작되는 새벽기도, 오전 새참기도, 오후 새참기도 등 으리으리한 교회 안에 모여 너덧 차례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할 일이 없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줄곧 집안에만 갇혀 있다면, 누군들 배겨내랴. 조금이라도 방장이나 관리인의 눈에 벗어난 행동을 할라치면 폭력과 폭언이 되돌아오는 것이 현실이라,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는 입도 아예 뻥긋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 심한 경우에는 소위 교육실이나 보호실(감금방)로 직행한다. 한번 들어가면 짧게는 사흘, 길게는 열흘까지 0.5평 남짓의 보호실에 감금되는데, 입고 있던 옷이 모두 벗겨진 채, ‘금식’이라는 이유로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굶어야 한다. 그것도 창문 전체가 쇠창살로 막힌 냉방에서 말이다. 보호실에 감금되면 관리자의 동의 없이는 편지, 전화, 면회 등 외부와의 어떤 연락도 불가능하며, 예컨대 필기도구조차 소지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현장조사를 통해 두 시설 모두 알코올중독자와 정신장애인을 구분 없이 수용한 결과, 시설 내 폭력이 난무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알코올중독자는 술을 먹지 않으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정신장애인과 함께 지내면서, 억눌린 분노를 분출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을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위 내용들은 3중 철문 안의 시설들을 직접 목격하고,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을 일대일로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경로로 이 시설까지 오게 되었을까?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입소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신장애로 인한 가정 해체, 가정 내의 보호, 가정폭력, 낙인 등의 문제로 ‘가족복지’ 차원에서 시설로 보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정신장애인의 치료 및 재활에 드는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가족들은 시설에서의 생활이 어떠한지 알지도 못한 채, 그나마 월 40여 만 원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값싼(?) 기도원으로 이들을 보내는 것이다. 알코올중독자도 주로 만취나 만취로 인한 폭력 상태에서 가족이나 주변인의 요청으로, 000-0129(환자 이송단)에 의해 시설에 실려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알코올중독자를 치료하거나,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전무하기 때문에 기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가족의 항변은 알코올중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수준을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제대로 가고 있나?

무엇보다 아직까지 이런 시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생활시설의 직·간접적인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형식적인 실태조사만 실시했을 뿐 어떠한 지도, 감독도 하지 않았던 데 있다.

문제가 된 두 시설 모두 현재 『신고시설』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게 되어 있는 『조건부 정신요양시설』로 신고를 마친 상태다. 『조건부 시설』은 유예기간인 2005년 7월 31일까지 사회복지생활시설 신고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고시설로 전환하여 예산지원을 받게 된다. 이

기간에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로 전환 가능한 시설임이 인정되면 단계적으로 인력과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조건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이번 두 시설에서 문제가 된 심각한 수용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밝혀낼 수 없도록 되어있다.

두 시설의 인권 침해상황은 미신고 복지시설이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파생된다.

- ▲ 끝없이 불거지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인권유린과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
- ▲ 불안정한 수입구조로 인한 시설의 영세성과 재정확보의 어려움
- ▲ 운영자와 그의 가족 그리고 장기 자원활동자 중심의 인력 구성으로 인한 종사자의 전문성 결여, 혼신성만을 강조하는 분위기, 종사자의 신분 보장 미흡
- ▲ 수용에만 초점을 맞춘 시설 운영상의 문제, 미흡한 사회복귀프로그램과 행정기관과의 연계성 부족

2002년 보건복지부는 이상과 같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성화를 위한 종합관리대책 추진지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부재

▲ 기존 시설정책의 변화 없이, 미신고시설만을 위한 특례법체계 도입으로 인한 문제

▲ 3년 후 미신고시설 강제폐쇄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책 미흡

▲ 빈약한 지원예산으로 신고시설 조건을 갖출 수 있을지 여부

▲ 시설(지원) 중심의 예산지원 문제

▲ 인력 지원 전무

▲ 기존의 시설지원방식(일정 규모 이상/대형화)에서 진전된 내용 부재

▲ 탈시설화 흐름에 역행

▲ 미신고시설이 이용시설이 아닌 생활시설에 집중되어 발생되는 문제

▲ 시행규칙 개정 시 법체계상의 혼란 예상

▲ 대규모시설 위주의 정책 고수

위에서 지적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민간단체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성실, 온혜 양 시설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후조치하라.

2. 보건복지부는 2003년 12월에 실시할 예정인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를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하라.

3.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을 전면 계검토하라.

4. 보건복지부는 조건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라.

- 정신장애인의 의료비 경감대책은 공공의료체계에 의해서 세워져야 한다
- 알코올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알코올중독자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정신지체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은 반드시 분리, 운영되어야 한다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정책 속에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종사자 그리고 운영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포함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 대형화, 폐쇄형으로 가는 추세를 막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소규모화를 지향해야 한다
-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의 대상에 사회복귀시설(중간시설)을 포함하고, 적용 대상을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시설운영자 중심에서 시설생활자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2003. 11. 27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좋은집, 태화샘솟는집, CMHV(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 대책위원회(준)

경기복지시민연대, 노들장애인아학,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섬김과니눔회장애인봉사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시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의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좋은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태화샘솟는집,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지원봉사단) (이상 22개 단체)

<150-809>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00번지 덕승빌딩 7층 전화 :
02-2675-8153 www.cowalk.or.kr
담당 김정하 활동가 016-252-9463 / jh-51@hanmail.net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보도자료> 옥탑방에 장애 아동을 감금한 지인언어치료원 사건

발신일 : 2005년 5월 18일

매 수 : 7매(표지 포함)

1.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 이하 공대위)는 지난 5월 16일 성남시아동학대예방센터의 도움을 받아 성남시 단대동에 위치한 '지인언어치료교육원'(원

장 죄일호)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단행했습니다. 공대위는 그곳에서 주택가 건물 옥탑방에 자폐아를 비롯한 중증의 장애아동들을 감금한 채 짐승처럼 사육하고 있는 충격적인 인권유린의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3. 성남시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아이들이 학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곧바로 인근 장애인 재활시설로 긴급구제, 일시보호하였고, 부모들에게 연락하였습니다. 부모들은 죄원장이 성남시 야탑에 있는 50평 규모의 다른 시설만 알고 있었고, 당연히 폐적한 환경의 아파트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죄원장은 야탑의 아파트를 이용하여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들을 유인한 뒤 단대동에 있는 옥탑방에 감금하여 왔던 것입니다.

4. 우리 공대위는 이와 같은 현장을 취재 보도함에 있어 일부 언론사가 장애 아동들의 얼굴을 전부 보이도록 보도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항의합니다. 장애 아동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이는 다시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이에 귀사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보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말 못하는 중증정신지체장애인아동 옥탑방에 감금·학대한 악질 사례
50평 아파트 위장 시설로 장애아 부모 유인
담당 공무원은 시설 지원금 추천서 써 줘

1. 지인언어치료교육원 개요

- 원장 : 최일호(남, 50대)
- 주소 :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60-18번지(시청에서 파악하기로는 '지인언어치료교육원', 원장은 '솔잎원'이라고 부름)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탐마을 경향아파트 000동 000호 (시청에서는 '솔잎원'으로 파악, 실제 간판은 '지인언어치료교육원')
- 옥탑방의 시설은 2004년 초부터 운영된 것으로 보이며, 야탑동의 시설은 1995년경부터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임.
- 이들 시설 중 옥탑방의 시설은 주택가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장애아동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인 줄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시청에서는 올 1월에 이 시설을 파악하였다고 함.
- 시설의 종류 : 미신고 정신지체아 불법 수용시설임.
- 수용된 아동들 : 자폐아, 정신지체 장애아, 발달장애 아동 등 10명의 장애아동들이 옥탑방에 감금되어 있었고, 8살에서 25살까지의 아이들이

남녀 구분없이 수용되었음. 반면에 야탑동의 아파트에는 4명의 장애 아동들이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와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에 의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함.

2. 사건개요와 문제점

1) 제보와 사전 조사 경위

- 지난 4월 25일 성남의 한 대안 중학교(이우중학교)의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나가는 옥탑방의 한 시설에서 중증의 정신지체 장애 아동들이 감금된 채 원장에게 학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중학교의 교사가 시설공대위에 제보를 해옴.
- 4월 28일 중학교 자원봉사 학생들과 함께 시설공대위 관계자가 옥탑방 시설을 방문하여 제보 내용을 확인함. 중학생들의 자원활동을 찍는다며 상황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였음.
- 5월 12일 제보한 중학교 교사, 중학생들과 함께 시설공대위 관계자 등 옥탑방 시설을 방문. 원장은 외부에 나가 있었으며,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문 앞의 신발에 열쇠를 원장이 가르쳐 주어서 열쇠를 찾아 따고 들어감. 원장이 오기 전에 아이들이 감금 상태에 있었고, 원장이 폭행을 한다는 사실들을 장애아동들을 통해 재확인함.

2) 방문 조사 과정

-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 시설공대위는 성남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이 내용을 신고하고, 학대받는 아동들의 긴급구제를 요청함.
- 이에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5월 16일 방문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시설공대위관계자,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동행하여 전격적인 현장조사를 벌이게 됨.
- 5월 16일 11시 30분경, 조사단은 성남시 아동학대예방센터 관계자와

동행하여 옥탑방으로 올라가 이중의 쇠창살과 밖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옥탑방 안에 중증 장애아동들이 감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이후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이후 성남시청 관계자가 도착하였다.

- 낮 12시 20분경 성남시청 관계자의 전화를 받고 원장이 옥탑방 현장에 도착.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관계자가 “보호자 없이 방임한 것은 아동 복지법을 위반”한 것이며, 인근 시설로 긴급 구제할 것임을 통보함. 이후 10명의 중증 정신지체 장애아동들을 인근의 소망재활원에 일시보호 조치함.
- 오후 3시 30분경, 최원장의 안내로 야탑동 경남아파트에 소재한 다른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함.
- 현재 단대동 옥탑방에 갇혀 있던 대부분의 장애아동들은 부모에게 인계되어 돌아간 상태이며, 성남 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를 짚고 최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3) 지인언어치료교육원(옥탑방)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내용

① 감금 시설에 완전 격리

- 단대 오거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의 주택가에 위치한 3층 건물의 옥탑방임. 옥탑방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무척이나 가파르고, 옥탑방으로 통하는 문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음.
- 옥탑방에는 방 2, 거실 겸 부엌 1, 화장실 1, 옥탑 마당으로 구성된 시설에 창마다 쇠창살이 쳐져 있었고, 창도 철사로 묶여 있어서 문을 열고 닫지 못해 환기가 되지 않아 악취가 코를 찔렀음.
- 원장은 문을 외부로 잠근 채 일을 보러 다녔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올 때와 식사 때, 매일 일요일 과천교회에 갈 때 외에는 중증의 장애아동들은 완전히 갇혀 있는 상태임.
- 내부에는 TV조차 없고 웃장 외에는 거실 웃장 외에는 가구가 전혀 없었으며, 이불도 3채 정도여서 10명의 아이들이 덮고 자기에는 턱없이 부

족하였음.

- 원장은 옥탑방 아래에 집을 얻어 기족과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야간에는 중증의 장애아동들만 옥탑방에 남게 됨.

==> 중증 장애아동들의 경우 특별한 보호가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감금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음.

② 황당한 치료 프로그램

- 중증의 장애아동들을 보호,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과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옥탑방에는 치료기구나 시설이 전무하였고, 원장은 전문적인 소양은 전혀 없었음.

- 옥탑방 내부 벽마다 신문지를 붙여 놓고 이것을 뜯어 만든다면서 이것을 언어치료 프로그램이라고 강변함. 또 쇠창살을 그릇 등으로 긁으면서 음악치료라고 강변하고, 자원봉사자들 앞에서 방문조사단 앞에서 이를 재현하여 보여주기도 하였음.

- 자폐아동들이나 정신지체 장애아동들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모이게 하는 등으로 하여 오히려 장애아동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음.

- 원장은 아동들의 현실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옥탑방에서 야탑동까지 전철로 이동시켜 야탑동 아파트에서 주기적으로 치료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임이 드러남. 아이들은 감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로지 1주일에 1회 교회 갈 때외는 밖에 나오지 않았음이 확인됨.

- 학령기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음.

==> 무자격자에 의한 비교육적인 치료방법을 동원하고 있었고, 학령기 아동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음.

③ 중증 정신지체아동들에 대한 학대

- 중학생들이 자원활동을 갔을 때 한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로 원장이 뺨을 6.7대 때려 코피가 나는 광경을 목격하였음. 원장의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인해 기분 상태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폭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전조사 갔을 때 아이들은 원장의 폭행을 재확인하여 주었으며, 아이들의 등에는 중증 정신지체 장애아동들이 자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었음. 대부분의 아이들이 말을 못하지만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은 원장이 빨래 방망이로 폭행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였음. 원장이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는 무의식적으로 방어자세를 취하곤 하는 것이 목격되기도 함.

- 아이들은 원장의 말에 기계적으로 움직여서 평소 자폐아나 정신지체 장애아동들의 행동과는 크게 다르게 보였음. 집합이나 노래 부르기 등에 순응하는 것은 치료의 결과라기보다는 폭행에 따른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아이들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고, 속옷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입지 않고 있었으며, 화장실에는 칫솔이 한 개 밖에 없었음. 원장은 매일 목욕을 시킨다고 하나(20살의 여성도 자신이 직접 시킨다고 말하기도 하였음), 아이들이 청결 상태로는 목욕은 교회 갈 때 한 번 정도 밖에 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식사도 원장이 3층에서 직접 순수 국내 농산물로 지어 준다고 하였지만, 옥탑방 안에는 밥그릇만 달랑 있고, 제대로 된 식사가 제공되었다고는 믿을 수 없으며, 시설 내에서 먹을 물은 수돗물 외에는 없었음.

==> 아이들은 식생활도 보장받지 못한 채 폭행 등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보임.

④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심리를 악용한 악질 사례

- 중증의 장애아동들을 둔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 양육 등을 매우 어려워하고 있음. 이런 이유로 생활시설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런 중증 장애아동들의 부모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장애아동들을 모집하였음.

- 옥탑동 아파트에는 48평이고, 그곳에는 각종 교자재가 있었고, 방에는

아이들이 자는 침대가 있었으며, 모든 환경은 폐적하고, 특히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김 아무개(여)씨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페트 타입의 대학 공부 중인 교사도 두고 있어 옥탑방과는 비교 할 수 없는 상황임. 그렇지만 이곳에서도 제대로 된 치료 프로그램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데, 교재나 교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 김씨는 아파트 시설을 소개한 선전지에서 “언어발달지체아, 자폐아, 정서장애아, 전반적인 발달지체아, 정신지체아, 청각장애, 말더듬이, 뇌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 학습부진아”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언어 치료를 그것도 숙식을 하면서 치료시킬 수 있다고 선전하여 부모들을 혼혹시켰음.

- 이곳으로 온 장애아동들의 부모들은 폐적한 환경에 전문가가 치료한다는 것에 혹해서 월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불하고 아이들을 맡기게 됨. 그런 직후 아이들은 단대동의 옥탑방 수용시설로 옮겨져 감금상태에 놓이게 됨. 부모들에게는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찾아오더라도 옥탑방에서 이곳으로 옮겨 만나게 하였으므로 부모들은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믿게 되었음.

- 원장은 부모들에게 후원금 또는 다른 시설 동업을 이유로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였음. 원장은 자신의 말로 경기도 하남 지역에 2만 평 규모의 땅을 보고 있으며, 그곳에 노인과 아동 복지시설을 지어 운영할 것이라고 말하고는 하였음. 또 야탑에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설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보임.

- 과천교회 신도 중 3명은 원장에게 아동들을 맡겼는데, 원장은 과천교회에는 매주 아이들을 데리고 나감. 그곳에서 만나는 부모들에게는 있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고 하고, 식이요법으로 아이들이 비만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등으로 철저히 기만하였음.

==> 중증 장애아동들의 부모들을 철저히 기만하여 장애아동들을 모은 뒤에 옥탑방으로 옮겨서 감금, 방치, 학대하였음.

4) 시청 담당공무원의 문제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2년 6월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미신고시설의 실태조사 및 분기별 1회 방문, 시군구 미신고 복지시설 전담공무원은 필요시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조치(경고, 생활자 전원조치, 고발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또한 2003년 11월 7일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불법감금, 구타, 강제노역 등 인권관련 위반사항은 없는지 지도점검'도록 하였음.
- 성남시청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인 최미숙 씨는 단대동의 옥탑방 시설을 1월에 알고, 방문하였음. 그렇지만 미신고 시설이 대부분 열악하다는 정도의 인식을 갖고 이 시설을 폐쇄하거나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긴급구제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음.
- 이는 보건복지부의 조건부시설 양성화정책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조건부시설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시설 내에서의 학대와 감금, 방치 등은 형사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였음. 더욱이 이 시설은 위와 같이 아파트 시설을 이용하여 옥탑방에 아이들을 감금하여 사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학생들도 알아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였음.
- 이 시설들은 조건부 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미신고 시설로 즉각적인 폐쇄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지난 4월 KT&G가 시행한 '미신고복지시설 건축물 설비 개보수 지원사업'에 이 시설을 추천하는 추천서를 작성하여 주었음.
- 담당 공무원 최씨는 현장 조사 갔을 때도 원장에 전화하면서 조사 나온 사람들과 상황을 전화로 상세히 알려주는 모습이 보여 조사단의 의혹을 사고 있음.
- > 담당 공무원의 장애 아동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에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런 공무원들에 의해 오히려 불법적인 미신고 시설의 운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5) 언론 보도의 문제

- 시설을 방문조사하는 과정에 언론사가 동행취재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생활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임.
 - 이번 방문조사 과정에서도 일부 언론들이 동행 취재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설공대위 관계자 등은 아이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사진 처리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당부하였음.
 - 그럼에도 한 일간지에 아이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이 두 컷이나 실려서 충격을 주었음. 이를 발견한 시설공대위 관계자가 이에 항의하여 마지막 판에는 약간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이 실렸으나, 언론사가 장애 아동의 인권침해에는 감수성이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음.
- ==> 언론의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이 요망됨.

3. 조사 결론과 향후 공대위의 대책

1) 조사 결론

- 말 못하는 중증 장애아동들을 감금, 학대하였고, 중증 정신지체 장애 아동들을 둔 부모들의 심리 상태를 악용한 악질적인 장애 아동에 대한 충격적인 인권침해 사건임.
- 이번 사건의 특징은 일반인들이 사는 평범한 주택가에서 불법적인 미신고 시설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시설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이와 같은 시설의 분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임.
- 쾌적한 환경의 치료시설로 장애아동들의 부모를 유인하여 장애아동들을 모으고 다른 시설에 감금하여 왔다는 점에서 장애아동 수용시설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임.
-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이와 같은 범행에 공범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시설의 상황을 발견한 담당공무원도 범행을 방조하고 있었다

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2) 시설공대위의 향후 계획

- 경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본 뒤에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대위 차원에서 고발할 계획임. 특히 시 담당공무원의 경우 경찰 수사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시 담당 공무원 등 책임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할 것임.
- 문제 사회복지시설의 새로운 양상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에 이와 같은 상황을 알리고, 무조건적인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가 아닌 민관 합동의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요구할 것임.
- 이와 같은 미신고 시설이 생겨날 수 있는 배경에는 현재의 정신지체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할 것이며, 보건복지부가 이와 같은 현실을 인정한 채 일부분만 개정하려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왜곡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갈 것임.

(끝)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

<150-809>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00번지 덕승빌딩 7층

전화 : 02-2675-8153 www.cowalk.or.kr

담당 김정하 활동가 016-252-9463 / jh-51@hanmail.net

이은희 활동가 019-9494-1801 / silverly@jinbo.net

총 매수: 13매(표지 포함)

보도자료

인권침해 당한 시설생활자의 호소 무시하고 시설에 돌려보내,
시설내 감금·酷김·폭행 등 피해 유발한 인제경찰서 인권위 진정!

인권침해 방기한 인제군 직무유기로 고발!

사건개요 및 문제점

1. 심신수양원 개요

- 원장 : 이기일 목사(남, 50대)
- 주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54
- 연락처 : 033-463-4974

2. 사건개요와 문제점

◆ 일시 : 2005년 4월 2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

◆ 주최 :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대위(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조미선(시설공대위, 행동하는 의사회 활동가)
- 경과보고 김정하(시설공대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 피해자 증언 조00씨, 박00씨(前 심신수양원 생활인)
- 연대 발언 박정규(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쟁취를위한 전국연대회의 공동대표,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 고발취지 설명 임현정(시설공대위, 경기복지시민연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변연식(시설공대위, 천주교인권위원장)
- 질의응답

◆ 첨부자료

- 사건개요 및 문제점
- 고발장, 진정서 요약
- 기자회견문

1) 심신수양원내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 제보 경위

심신수양원에 지난 2004년 8월에 입소한 박씨(47세, 남)는, 2005년 3월 18일 춘천지검에 고발인조사를 받기 위하여 소환되었고 조사 후 시설로 다시 돌아갈 경우 일신상의 위협을 느껴 시설공대위에 연락을 하여 도움을 호소하였음. 2005년 3월 21일 2차 고발인조사 를 받을 당시, 시설공대위 측은 박씨를 만나 시설전반에 대한 인

권침해 상황을 듣게 되었음. 이미 원장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2005년 4월 8일 시설공대위는 복지부와 함께 심신수양원을 방문조사하였고, 당시 시설내 거주하고 있던 조씨(67세, 남)와 한씨(65세, 남)에게 추가적으로 인권침해 상황을 듣게 됨.

○ 심신수양원내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내용

① 불법 감금 및 잠금 장치

심신수양원은 현관과 복도등 외부에서 각 방까지 4종의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또한 각 방은 외부에서 잠그게 되어 있으며 창문도 모두 쇠창살이 있음. 생활인 박씨는 경찰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두달간 방에서 갇혀 있었으면서, 사용하던 훨체어도 지급하지 않음. 박씨는 훨체어가 없으면 자신은 대소변을 볼수 없다고 재차 호소하였고, 이후 이를만에 훨체어는 지급되었으나 두달동안 방안에 갇혀 있었음. 또한 조씨를 포함한 4명의 생활인은 지난 2월 9일, 마찬가지로 고발했다는 이유로 3일동안 방안에 갇혀 있었음. 3일동안 원장은 밥을 짖기고, 대소변도 방안에서 양동이에 보게 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서슴치 않았음. 또한 치매노인들은 문을 열어두면 돌아다녀서 안된다며 항상 문을 잠가 두고, 식사도 방안에서 혼자 먹게 하고, 대소변도 방안에서 양동이에 보게 함.

② 납치 및 폭행

생활인 박씨는 2004년 8월경 박씨는 믿음의 집이라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장 이씨와 자원봉사자라고 불리는 두명의 남자에게 집단 구타 당한 후 차에 태워져 심신수양원으로 납치됨. 납치과정에서 차안에서도 술을 마신 원장은 지속적으로 박씨를

폭행함. 또한 조씨는 2005년 2월 9일 경찰에 자신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원장에게 가슴 등을 발로 채임. 또한 원장과 원장부인은 시설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이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밤에 소리지른다는 이유로 ‘마귀를 쫓는다’며 안찰기도 명목으로 온몸을 구타함.

③ 원장에 의한 여성생활인 성폭행

원장은 부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해 서울로 공부하러 가는 등 시설을 비울때마다 술이 만취된 상황에서 하의를 벗고 돌아다니면서, 여성생활인들을 자주 성폭행함. 각 방문이 바깥에서 잠그게 되어 있어 시설생활인중 다수가 그 장면을 목격함. 현재 원장 이씨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상황임.

④ 의료적인 문제로 호소하는 것 무시, 이로 인해 사망자 4명.

2004년 8월부터 현재까지 4명의 사망자가 있었음. (주00씨, 오00씨, 김00씨 외 1인) 그중 청각장애를 가진 오씨만 하더라도 매우 건강한 사람이었음. 그러나 체했는지 계속 배가 아프다고 며칠동안 호소하였지만 시설측에서는 병원 한번 데려가지 않았음. 며칠 후 오씨는 시설내에서 사망했고, 가족들이 와서 시신을 모셔감. 그 외에도 사망한 사람들은 대부분은 평소 건강한 사람들이었는데 아프다고 호소해도 병원을 데려가거나 의료진을 불러주지 않았음. 또한 조씨는 자신의 다리가 인공뼈로 마모되어 굉장히 고통스러우니 진통제를 달라고 호소하였으나, 주지 않다가 4월 8일 복지부와 시설공대위가 수양원을 다년간 후부터 주기 시작함. 한씨의 경우 편마비가 있어 물리치료를 받기를 희망하였으나 무시됨. 박씨와 조씨등 수양원에서 생활하면서 의료진이나 보건소 직원등

은 한번도 만난적이 없음.

⑤ 외부소통권 제한

박씨, 조씨, 한씨 등은 시설에 입소한 후 가족들과 외부에 전화한 통, 편지한통 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상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리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음. 한씨는 생활인중 도망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주고 인권위에 꼭 진정해 달라고 호소하였지만 아무 소식이 없다고 함. 시설내에는 공중전화나 우편함 등이 전무한 상황임.

⑥ 열악한 의식주

수양원은 수급권자의 기초생계비 약 30~40만원, 비수급권자의 입소비 35~40만원을 받으면서 열악한 의식주를 제공함. 점심은 거의 국수나 라면으로 먹으며, 반찬이 형편없음. 겨울에는 난방을 한시간만 제공하고, 외부사람이 온다고 해야 난방을 계속 틀어줌.

2) 심신수양원의 현 상황

○ 현재, 원장 이씨는 여성생활인을 성폭행한 혐의와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00일, 구속되어 있는 상황임. (춘천지검 민만기검사 담당) 원장 구속이후 실질적인 운영은 원장의 부인이 하고 있으며, 최근 복지부로부터 “생활자 즉시 전원조치 후 시설장 형 확정 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 여부 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음. 그러나 현재까지도 약 12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제군은 현재 거주하는 생활인들의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여전히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

○ 또한 심신수양원은 지난 <미신고시설 민간기금 지원사업>으로 약 8천만원의 건축물 증축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바 있음. 그 후 원장구속 등 문제가 밝혀지면서 현재 인제군은 지원금 8천만 원을 다시 회수함. 심신수양원내의 인권침해가 하루 이틀의 문제 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시설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인제군이 제대로 된 조사없이 미신고시설지원을 결정한 것임 을 반증한 것임.

○ 지난 4월 8일 진행한 복지부와 시설공대위의 방문조사 이후, 시설측에서는 문제가 되는 창문의 쇠창살과 외부 잠금장치 등을 수리하였고 생활인들을 대상으로는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がら' 며 폐쇄시설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심신수 양원은 인제군으로부터 차량거리로 약 1시간이나 떨어져 있고, 택 시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멀리 떨어진 가게에 가서 콜택시를 불러 야 하는 상황임. 결국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정실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실제로 본인의 의사가 퇴소하고 싶다하더라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님.

3)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내용과 인제군의 직무유기

○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양성화 지침 및 미신고복지시설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2년 6월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미신고시설의 실태조사 및 분기별 1회 방문, 시군구 미신고 복지시설 전담공무원은 필요시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조치(경고, 생활자 전원조치, 고발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또한 2003년 11월 7일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불법감금, 구타, 강제노역 등 인권관련 위반사항은 없는지 지도점검' 토록 하였음. 그러나 제보자들은 자신이 생활하는 동안 공무원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 호소함. 이는 인제군이 심신수양원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원장이 구속된 후에도 복지부와의 조사를 통해 외부잠금장치 등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아무런 추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해결의 의지가 전무함을 반증하는 것임.

○ 보건복지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점검 실시 및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또한 보건복지부는 2004년 3월 17일 ~ 4월 3일까지 <미신고복지 시설 점검 실시>를 각 시군구에 하달하고 자체점검 및 문제시설 은 복지부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 이 조사의 목적중에는 '생활자의 생활환경 및 인권보장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계속 지적되어 온 바, 미시고시설의 생활 및 인권상태를 점검하여 문제 시설 조치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한다고 발표함. 이 조사에서는 ▲시설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화장실, 세면 시설이 사생활보장 되는지 여부, ▲환경이 영양상태 및 청결상태 가 양호한지 여부, ▲폭행, 징벌, 성폭행 여부, ▲장기수용 여부, ▲수급자 급여를 직접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표시하게 하고, 문제 가 있는 시설들은 별도 보고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인제군은 이러한 조사항목에 관해, 거의 모든 항목에 "문제없음"으로 조사한 내

용을 복지부에 보고함. 결국 복지부의 문제시설 합동점검 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까지 인권침해가 방기된 결과를 낳음. 이는 인제군이 조사의 의지가 전무함을 넘어 심신수양원의 문제를 은닉하려는 의혹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 심신수양원의 지도감독 권한

심신수양원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강원도와 인제군은 “조건부 신고제도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신고(허가)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처벌만을 유예했을 뿐 타 법에 의한 불법행위(인권침해, 폭행 등)까지 유예한 것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시군구에 하달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가 문제가 있는 시설들을 처벌하도록 벌칙규정이 제시되어 있음. 따라서 강원도와 인제군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임.

4) 인제경찰서의 책임 방기

○ 인제경찰서에 도움 호소하는 시설내 인권침해 피해생활인들, 오히려 경찰이 시설로 돌려보냄.

심신수양원에서 생활하던 생활인 조씨를 포함한 4명은, 2005년 2월 9일, 원장이 명절을 쇠러 간다며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해 도망. 근처의 가게에 가서 콜택시를 타고 오전 10시경, 인제경찰서에 도착하여 그당시 담당이었던 장00형사에게 긴급 도움을 요청함. 생활인들은 경찰에게 “돌아가면 원장이 우리를 죽인다, 제발 살려달라,”, “집에 보내달라,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차비라도 달라,”, “가족들에 의해 시설에 보내졌으니 가족들에게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라고 간절히 호소하였음. 그러나 경찰은 시설로부터 “4명이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조씨를 포함한 4명에게 “당신들이 시설에서 도망쳤고, 시설에 부채(생활인들의 미납한 입소비)가 있을지 모르니 그냥 집으로 보낼 수 없다” 등의 반인권적이고 비상식적 언행을 하면서 시설로 돌려보냄. 이 과정에서 일부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긴 하였으나, 가족들이 오기전에 4명 모두를 경찰차에 태워 시설로 돌려보냈음. 또한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람에게 조차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문제시설인 심신수양원으로 돌려보냄. 이 과정에서 인제경찰서는 이미 박00씨에 의해 심신수양원내의 인권침해에 대해 고발접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문제시설인것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인들의 당할 보복조치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설로 돌려보냈음.

○ 인제경찰서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시설생활자들의 피해

피해자 4명 중 1명(구00씨)은 가족이 와서 데려가고, 나머지 세명은 경찰서에 심신수양원의 인권침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원장에 의해 시설내에 있던 감금방(치매노인이 있던 방)에 3일 동안 감금 당하고, 폭행당함. 그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먹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대소변도 아침에 양동이를 넣어주고 저녁에 가져가는 등의 교도소의 수용자만도 못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인권침해를 자행하였음. 이는 결과적으로 인제경찰서의 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시설생활자들의 피해임이 명확함.

5) 복지부는 미신고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실시한 후, 조치를 강구해야 함.

○ 보건복지부의 전면적인 실태조사 의지 부족

지난 2004년 시설공대위에서는 3차례의 복지부 관계자 면담과 1차례의 복지부장관 면담을 통하여, 미신고시설내 인권유린 실태를 밝히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하였음. 그러나 복지부는 예산과 인력을 이유로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음. 그러나 성실 정양원, 은혜사랑의집, 바울선교원, 심신수양원 등에서 알수있듯이 폭행, 감금, 성폭행, 강제노역, 수급권 횡령 등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상황임. 이는 복지부가 2004년 상반기에 시군구를 통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음. 결국 시군구를 통한 미신고시설 조사는 형식적이며, 부정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더욱이 이 조사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민간기금 천억원을 들여 미신고시설을 지원하고 있고, 문제가 된 심신수양원도 8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시설을 증축하던 상황이었음. 결국 복지부는 제대로 된 미신고시설 실태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서 인권침해를 방기했을 뿐 아니라, 민간의 소중한 자원까지도 엉뚱한 곳에 낭비하는 상황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생활자들 1:1 면접방식의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그동안 미신고시설에 대한 조사는 시설장을 상대로 한 기본 현황조사가 고작이었음. 이제는 현황조사가 아닌 생활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시설장이 아닌 생활자들에 대한 1:1 직접 면접조사 방식이

최대한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음. 또한 바울선교원과 심신수양원에서 드러나듯이, 좁은 지역사회내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구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은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민관합동의 조사인력을 구성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고발장 요지

1. 조건부시설에 대한 인제군의 직무유기

- 고발인 :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
- 피고발인 : 인제군수 김장준, 인제군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 고발의 개요

최근 인제군 소재 심신수양원(강원도 인제읍 귀둔리)의 원장 이기일이 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는바, 위 심신수양원은 시설 생활자 대부분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장기간 감금하고, 일상적으로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및 범죄행위가 있었던 점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음.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심신수양원에 대한 관리, 감독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특히 심신수양원의 인권

침해 등에 대하여는 이를 조사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고, 만일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형사고발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거부하여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였음.

○ 고발할 범죄 사실

가. 심신수양원의 인권침해 및 범죄

인제군 소재 심신수양원에서는 ▲ 원장이 여성 생활자들을 성폭행하고, ▲ 문을 외부에서 잠그고 독방에 가두는 등 생활자들을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장기간 구금하였으며, ▲ 생활자들에게 일상적인 구타와 폭행, 폭언을 자행하기도 하고, ▲ 회계장비를 구비하지 않는 등 재정적 투명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급액과 1인당 월 35만원의 생활비로 시설이 운영되어 생활자들에게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일이 드러나거나, 그에 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나. 피고발인들의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동법 제34조

제2항),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동법 제54조 제3호).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와 시행규칙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시설장 교체, 시설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복지시설이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인권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시설운영도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미신고 복지시설의 양성화를 위하여 조건부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시군구별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계속 신고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생활자 타 시설 전원이전, 경고 및 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음(참고자료 1). 특히 보건복지부는 2003. 11.경 경기도 소재 미신고 복지시설 퇴소자가 인권보호단체와 언론사 등에 불법감금 및 구타, 강제노역 사실 등을 제보함으로써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및 실태파악을 위해 시군구에 다음과 같이 관리지침을 시달한 사실이 있음(참고자료 2).

가. 시·군·구청 단위별로 미신고 복지시설 담당공무원을 지

정하여 책임관리토록 하고(사회복지과 및 보건소 합동)

나. 05. 7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요건을 갖추고 정신보건시설로 전환키로 한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신고시설로 전환되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함께 신고시설에 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되,

다. 분기별로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불법감금·구타, 강제 노역 등 인권관련 위반사항은 없는지 지도점검하며(위반시 고발조치)

* 금년 4/4분기 중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부(정신보건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람.

라. 동절기 화재예방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것

다.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

피고발인 김장준은 인제군수로서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에 대한 각종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이며, 피고발인 성명불상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담당자이므로, 피고발인들은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인 심신수양원에 대하여 관리, 감독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만일 심신수양원에 법령위반의 점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형사고발조치를 취하여야 의무가 있었음.

그런데 심신수양원에서는 생활자에 대한 성폭행과 폭행, 협박, 감금행위 등이 자행 또는 방치되었으며, 기타 열악한 환경에서 시

설생활자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점검하여 만일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형사고발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거부하였음.

특히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지침에 의하면 시군구에서는 미신고 복지시설의 생활 및 인권상태에 대한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점검을 하여야 할 항목을 보면 “생활자 거주시설에 외부 잠금장치, 최창살이 있는지 여부,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시설운영자 또는 생활자 상호간에 폭행,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 외부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사용 및 서신왕래가 자유로운지 여부”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참고자료 3), 피고발인들은 심신수양원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관리감독하지 않았음.

특히 심신수양원은 외형상 보더라도 사적 공간과 생활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고, 문을 전부 밖에서 잠그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방문의 대부분에는 창살이 쳐져 있고, 마루로 통하는 문도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고 있으며, 외부와 통신할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생활자들에 대한 성폭행과 폭행 등이 수시로 자행되었기 때문에 시설생활자들을 면밀히 면담하고 시설의 상황을 충실히 점검하였더라면 용이하게 시설의 인권침해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지침

에 따라 인제군에서 심신수양원에 대해 2004년 4월 6일 실시한 『미신고복지시설 현황 점검표』에 드러나듯 인제군은 심신수양원이 거의 모든 항목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음.

2. 긴급구호 및 신변보호를 요청한 시설생활인들에 대한 인제경찰서의 인권침해

- 진정인 :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구이원회(준)
- 피해자 : 김00씨, 조00씨, 최00씨, 구00씨
- 피진정인 : 인제경찰서

○ 사실 관계

(1) 피해사실

피해자 김00, 조00, 최00, 구00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54번지 소재 '심신수양원'이라는 조건부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던 생활자들임.

피해자들은 심신수양원에 있었던 인권침해들을 참기 힘들어 2005년 2월 9일 원장이 없는 틈을 이용해 시설에서 도망쳐 인제경찰서에 가서 심신수양원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족들에 의해 강제로 보내진 사실, 방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불법 감금 되어온 사실, 심신수양원의 원장과 그 측근들에 의한 폭행당한 사실 등을 진술하며 집으로 보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음.

피해자들은 경찰에게 “돌아가면 원장이 우리를 죽인다, 제발 살려달라,”, “집에 보내달라,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차비라도 달라,”, “가족들에 의해 시설에 보내졌으니 가족들에게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라는 등의 호소를 하였음.

그러나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족을 추궁하여 가족들에게 임의로 연락을 취하였고, 가족이 데리러 오겠다고 하였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피해자, 연락이 되지 않았던 피해자까지 경찰서에 왔던 모두를 다시 문제시설인 심신요양원으로 돌려보냈음.

피해자 4명 중 1명(구00씨)은 가족이 와서 데려갔는데, 나머지 세 명은 경찰서에 심신수양원의 인권침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원장이 시설내에 있던 감금방(치매노인이 있던 방)에 3일 동안 감금을 시켜놓고 폭행을 가하였음. 그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먹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대소변도 아침에 양동이를 넣어주고 저녁에 가져가는 등의 교도소의 수용자만도 못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인권침해를 자행하였음.

(2) 심신수양원은 이미 다른 생활자의 고발이 있었던 시설

2004년 10월경 심신수양원에서 생활하던 생활자인 박00씨는 원장부인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한 달 정도 자리를 비우자 원장이 술에 취해 끌어떨어진 틈을 타 다른 정신장애우 등 4명

의 도움을 받아 위 시설을 빠져나와 경찰서에 고발을 한 바 있음. 두 달 쯤 지난 시점인 2004년 12월경 형사 한명이 시설로 찾아와 그간에 내부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고발을 하면 원장을 구속할 수 있다고 설득하여 박00씨는 조서를 작성하고 고발을 다시 하게 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원장은 여자 생활자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기에 이르렀음.

○ 법령 검토

경찰관의 직무수행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함임(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그에 따라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제12조에 의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하고(범죄수사규칙 제2조 제1항),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엄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범죄수사규칙 제3조).

한편 수사를 할 때에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고(범죄수사규칙 제10조2), 피의자의 범죄수법, 동기, 피해자 등과의 관계, 연동 그 외의 상황으로부터 피해자 등에게 후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 그 외의 관계자에게 당해 피해자 등의 성명, 거주지 등을 알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당해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범죄수사규칙 제11조).

경찰관은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방송, 익명의 신고, 풍설 기타 널리 사회 현상에 주의하는 동시에 순찰, 불심검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의 단서를 얻는데 노력하여야 하고(범죄수사규칙 제48조), 범죄에 의한 피해신고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무조건 이를 접수하여야 함(범죄수사규칙 제50조). 또한 현장점검을 요하는 범죄의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현장에 임하여 필요한 수사를 행하여야 함(범죄수사규칙 제82조).

피해자들이 심신수양원에서의 감금과 폭행 그리고 그밖에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돌아가면 원장이 우리를 죽인다, 제발 살려달라, 집에 보내달라"고 호소한 바,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및 심신수양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을 다시 문제된 시설로 돌려보낸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상의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끼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기자회견문

복지 시설 문제 수수방관, 인제군과 인제경찰서를 고발한다!

지난 4월 8일, 우리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 대책위원회(이하 시설공대위)는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과 함께 강원도 인제군에 소재한 심신수양원의 생활자 보호 및 인권수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신수양원은 한국사회의 수용시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 문제시설로 알려진 'O'기도원(경기도 가평소재) 생활인이었던 시설장은 현재 여성 생활자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구속 상태이고, 생활자 대부분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입소 상태에서 일상적인 감금, 구타, 폭언 등이 자행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수급액과 1인당 월 35만원의 생활비로 운영되어 급식이나 난방, 위생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 또한 회계장부가 없고, 후원금 수령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라 시설 운영의 재정적 투명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관할 지자체인 강원도에 공문을 보내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강원도는 양양 산불을 평계로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관리감독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인제군은 이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할 의지가 없는 상태다. 이는 이미 2004년 시설 내 인권침해에 관해 분기별로 조사하라는 복지부의 지침에 생활인들에 대한 직접면담이 배제된 형식적인 조사만 시행하여 인권유린이나 비리 등의 문제를 축소·은폐시키는 등, 시설문제에 관한 관할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관할 경찰인 인제경찰서는 문제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커녕, 비인간적 생활에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걸고 빠져나와 살려달라며 시설장을 신고한 생활자들을 다시 문제시설로 돌려보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사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해당 생활자들은 시설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독방에 갇혀 3일간 물 한 모금 주어지지 않고 양동이로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의 상황을 방조해오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와 지역 경찰의 행태는 인권유린과 비리 등의 문제로 장기간 홍역을 끊었던 여러 복지시설문제의 사례를 볼 때, 시설장과 권력기관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우리 시설공대위는 인제군을 관할 지역 내 미신고시설 관리 감독의 소홀에 대한 직무유기로 고발하며, 인제경찰서는 일상적인 인권유린상태에 놓인 시설생활자들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것

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 한다.

심신수양원 문제에 관한 인제군과 인제경찰서의 조속한 현장점검과 행정처분 등을 촉구하며, 사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협명한 처분을 기대한다.

하나, 심신수양원 인권유린 방관한 인제군과 인제경찰서 각성하라!

하나, 사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복지시설 인권침해를 근절하라!

하나, 심신수양원 문제 해결하고 한국사회 복지시설 인권침해 끝장내자!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

경기복지시민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의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좋은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태화샘솟는집,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지원봉사단) (이상 22개 단체)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실태조사 길라잡이

나온날 2005년 8월

펴낸곳 조기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학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만든이 김정아, 박래근, 박숙경, 박우순, 연진민, 염혜근, 이은미, 이소연
편집 박숙경

100-031 서울시 종로 7동 1가 27-2번지 1층

전화 02)77-0393/02-777-0362 / 전송 02-775-6267

<http://www.outofsisuk.org>

†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과 만든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